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
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급여법」 개정(‘20.4.7)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연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보장기관(지방자치단체)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(주민등록전산정보, 지방세 체납정보)를 규정(안 제7조 개정)
- 복지부장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기준(3개월 이상 연체)을 규정(안 제8조 개정)
-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별표2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8호”를 “법 제11조제1항제8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
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정보

제8조제1항 중 “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”을 “대출금·신용카드대금의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체정보 또는 3개월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제7호”를 “법 제12조제1항제9호”로 한다.

제28조제6호 중 “법 제10조”를 “법 제9조의2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입수된 사람의 가구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
③ (생략)

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보장기관의 장(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

월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된 -----

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9조의2-----

에 관한 사무 7. ~ 17. (생략)	----- 7. ~ 17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3